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칭기스칸 MKF 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칭기스칸 MKF 녹색성장증권 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칭기스칸MKF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9.07.2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07.2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펀드코드 |
|--------------------------------|-------|
| 트러스톤 칭기스칸 MKF 녹색성장 증권 투자신탁[주식] | 93786 |
| A | 93790 |
| C1 | 93791 |
| C2 | 93792 |
| C3 | 93793 |
| C4 | 93794 |
| W | 93800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예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트러스트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 6308-05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조건 |
|-------------------|-------|---|
| 1) 지분증권 (주권 등) | 60%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 |
| 2) 채권 | 40%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주1) 투자대상은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주권 중 녹색성장 관련 기업의 주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1 : KOSPI지수

※ 비교지수2 : MKF 녹색성장지수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1) 투자전략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녹색성장관련 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녹색성장관련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성장잠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 그린카, LED, 풍력, 원자력·핵융합,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지열, 전력IT, CDM&탄소시장, 수처리, 4대강 정비, 폐기물처리 등의 사업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녹색성장관련 국내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KOSPI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각 사업분야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 야 | 내 용 |
|---------|--|
| 태양광 | 태양광발전은 반도체기술인 광기전력효과를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적극적 부양 정책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20%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그린카 | 화석원료의 고갈 우려, 환경규제 강화 등과 함께 연비향상 및 배기가스 저감을 목표로 그린카는 201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경 신규 차량 전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LED | 친환경적, 높은 광변환효율과 색재현성, 저전력, 고수명, 고속응답,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성 등 LED가 가지는 강점과 함께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및 적극적인 보급정책으로 시장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풍력 | 전세계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은 현재까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 원자력·핵융합 |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작은 청정에너지로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은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전체발전량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전규모가 큰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가장 유력한 발전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계는 TMI사고와 체르노빌 사태 이후 근 30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최근 유가 급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다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 4대강 정비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 복원, 홍수방지와 물부족 근본적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
| 폐기물처리 | 2008년 이후 지정 폐기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물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향후 폐기물을 통한 에너지 정책지원 등 시장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
| 기타 |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지열, 전력IT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 비교지수1 : KOSPI지수

※ 비교지수2 : MKF 녹색성장 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

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1 선정사유 :

국내증권시장을 대표하는 KOSPI지수는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2 선정사유 : MKF 녹색성장 지수

| | |
|---------------|--|
| 지수 명칭 | MKF 녹색성장지수 |
| 발표 기관 | (주)에프앤가이드 |
| 지수 구성 종목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녹색성장산업(태양광, 그린카, 풍력발전, 바이오연료, 지열, 전력IT, 탄소시장, 수처리, 폐기물, 4대강 정비 등) 관련 종목이라고 지수위원회에서 판정한 종목으로 지수화 * 2009년 5월 1일 현재 지수구성종목 수는 58개임 |
| 지수 계산방법 등 | - 시가총액가중지수 산출방식 - 지수 구성종목 정기개편일 : 매년 12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의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 첫 영업일 - 정기 개편 시 특정종목의 지수 내 비중이 5%를 초과할 경우 5%로 비중 제한 |
| 지수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 www.fnguide.com에서 지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주1) 상기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지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에프앤가이드 홈페이지(www.fnguide.com→FnGuide Index→Customized Index→TRUSTON 자산운용 녹색성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녹색성장관련 기업의 주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투자한 지분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권,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 해외투자 자산은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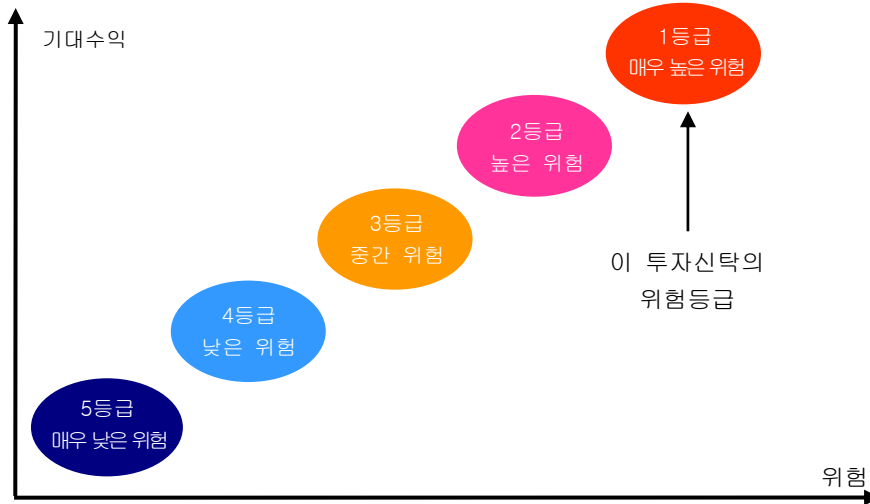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및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주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주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자보다 더 높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기준일:2009.06.02)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계상현 | 36세 | 주식운용 본부 3 팀장 | 1 | 381 억 | 99.08~00.10 PWC삼일회계법인 00.11~02.04 KPMG삼정회계법인 02.05~05.08 KTB자산운용 05.09~08.04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08.05~09.04 마이다스에셋매니지먼트 아시아(싱가포르) 09.05~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3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 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성명 | 운용기간 | 비고 |
|-----|-------------------------|----|
| 안홍익 | 2009.05.29 ~ 2009.06.02 | - |
| 계상현 | 2009.06.03 ~ 현재 | - |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C클래스는 이연판매보수(CDSC)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여 장기 보유할 경우 판매보수가 낮아집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 | | | |
|---------|--|----|----|----|----|---|
| | A | C1 | C2 | C3 | C4 | W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0% | 없음 | | | | |
|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 없음 | |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 (% ,연간) | | | | | | 지급시기 |
|----------------------------|--------------|-------|-------|-------|-------|-------|-------------|
| | A | C1 | C2 | C3 | C4 | W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0.75 | 0.75 | 0.75 | 0.75 | 0.75 | 0.75 | 매 3개월 후급 |
| 판매회사 보수 | 0.90 | 1.75 | 1.58 | 1.42 | 1.27 | 0.00 | |
| 수탁회사 보수 | 0.03 | 0.03 | 0.03 | 0.03 | 0.03 | 0.03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0.017 | 0.017 | 0.017 | 0.017 | 0.017 | 0.017 | |
| 기타 비용 ¹⁾ | 0.04 | 0.04 | 0.04 | 0.04 | 0.04 | 0.04 | 사유발생시 |
| 총 보수 비용(TER) ²⁾ | 1.737 | 2.587 | 2.417 | 2.257 | 2.107 | 0.837 | |
| 증권거래비용 ³⁾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사유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2.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3.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4.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주가지수사용료 등)
8. 법 제 442 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A | 272 | 629 | 1,009 | 2,069 |
| C | 259 | 742 | 1,202 | 2,468 |
| W | 84 | 262 | 454 | 1,011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2)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3) C 클래스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세율 | 과세시기 |
|----------------------|--|------------------------------|-------------|
| 투자신탁 | 별도의 세금부담 없음 | - | - |
| 수익자 | 원천징수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 장기투자적립식 국내 주식형 펀드 과세 | 1) 세제혜택 대상 :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세제혜택 내용 :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해당 저축 가입일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 비과세) + 수익자의 해당 연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은 추징함.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 |

※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②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권 평가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법제9조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 ②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③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투자신탁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이하의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p>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p> </div> <p>※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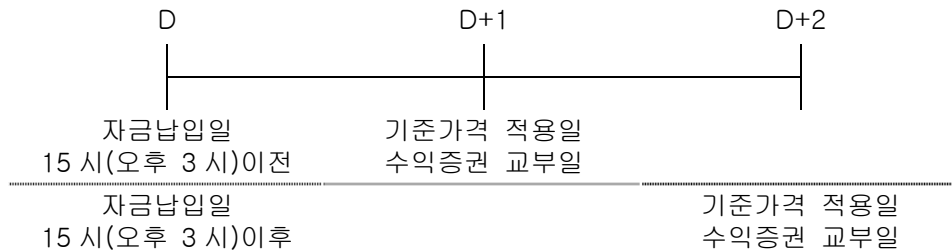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 구분 | A | C1 | C2 | C3 | C4 | W |
|------|------------|------------|---------------------------------|---------------------------------|---------------------------------|-------------------------------|
| 매입자격 | 가입제한 없음 | 가입제한 없음 | C1클래스 수익증권 보유기간 1 년 이상 | C2클래스 수익증권 보유기간 1 년 이상 | C3클래스 수익증권 보유기간 1 년 이상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 합자산관리 계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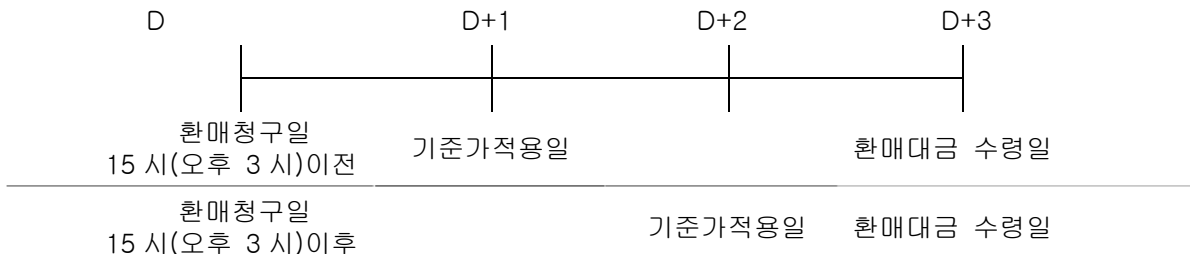
2)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가.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 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